

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217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1. 9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정이유

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영구임대주택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의 운영에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 및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제3조)

나.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

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예산계장 협의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39907호, 2023.10.11.)

30 (제260회-복지건설위제2차부록)

라. 입법 예고: 2023. 10. 4. ~ 10. 24.(20일간) / 의견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및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운영에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)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임대보증금,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입
2.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
3.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
4.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

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공요금 및 제세
2. 시설관리 운영비(위탁관리 수수료, 인건비 등)
3.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, 시설 보험료
4. 적립금 및 예비비
5. 공용시설 사용료 등

제4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)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조 및 같은 훈령 별표 1에 따른다.

제5조(목적 외 집행금지)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.

32 (제260회-복지건설위제2차부록)

제6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회계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근거법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41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: 공공실버주택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및 부대경비 발생
2. 비용추계의 전제

<지출부분>

- 공공실버주택 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 인건비, 수선유지비, 보험료,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위한 비용 발생
- 비용추계를 위해서 운영시 필수 인력을 기준으로 추정 인건비 및 추정비용을 산정하였음

<수입부분>

- 임대료 수입, 보증금 이자수입은 입주자 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합계
지출	인건비	156	172	190	209	230	957
	수선유지비 등	67	74	97	107	118	463
	특별수선충당금	2	2	2	2	2	10
	소계(a)	225	248	289	318	350	1,430
수입	임대료	41	41	51	51	51	235
	보증금 이자	3	3	4	4	4	18
	소계(b)	44	44	55	55	55	253
총비용(a-b)		181	204	234	263	295	1,177

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합계
구비		181	204	234	263	295	1,177

1. 부대의견 : 해당사항 없음
2. 협의사항 : 인건비, 수선유지비 등은 예산담당과 협의
3. 작 성 자 : 노인장애인과 7급 고유립 052-290-3613

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재원조달계획서

1. 재원분담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합계
구비	181	204	234	263	295	1,177
합계	181	204	234	263	295	1,177

2. 재원조달방안

- 연차별 구비 확보

3. 부대의견

- 해당없음

4. 협의사항

- 고령사회에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실버주택 운영을 위한 연차별 구비 확보 협의

5. 작성자

- 노인장애인과 행정7급 고유립 052-290-3613